

등촌 지와인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건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까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건본주택 운영 안내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건본주택(<http://www.ziwainapt.com/>)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 등촌 지와인아파트 홈페이지(<http://www.ziwainapt.com/>)를 통해 방문예약,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대상으로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등촌 지와인아파트 홈페이지(<http://www.ziwainap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해 건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 건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정부 지침에 따른 출입자 명단 기재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건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건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상담 전화(☎1644-551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상호 오인하거나 누락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상담을 위해 상담전화 회선(☎1644-5513)을 운영할 예정이나, 유선 상 문의건이 증가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관련하여서는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22입니다.(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 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22) 현재 서울특별시예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예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2021년 02월 22일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2021년 2월 2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 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 별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 자자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 자자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사전청약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및 25년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방문접수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가 지정한 견본주택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현장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9: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견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본 청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부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경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가능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경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ziwainap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공급계약 체결
일 정	2023.03.06. (월)	2023.03.07. (화)	2023.03.08. (수)	2023.03.14. (화)	2023.03.20. (월)~ 2023.03.22. (수)	2023.03.27. (월)~ 2023.03.29. (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직접 내방	직접 내방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0)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방문접수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이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1.0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분양대금

1.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택과 [주택과-5112 (2023.02.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2층~14,20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공동주택 136세대
 [특별공급 71세대(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27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4세대 포함)] 및 부대 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최하 층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006	01	059.6202	59	59.6202	18.3471	77.9673	37.1502	115.1176	23.1463	66	4	-	27	4	4	39	27	4
		02	074.0328	74	74.0328	21.3619	95.3947	46.1309	141.5256	28.7417	44	6	-	-	-	6	12	32	4
		03	077.3304	77	77.3304	22.6314	99.9618	48.1857	148.1475	30.0219	22	3	11	-	-	4	18	4	2
		04	084.9702	84	84.9702	27.1789	112.1491	52.9462	165.0953	32.9879	4	-	2	-	-	-	2	2	-
	합계											136	13	13	27	4	14	71	65

-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을 세대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건립세대 특성상 최하층은 101,102동은 최하층이 5층부터 시작되며, 103, 104동은 최하층이 3층부터 시작되니, 자세한 위치는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m², 세대]

약식표기		59	74	77	84	합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	
	장애인(서울특별시)	1	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50%)	-	-	6	1	7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 및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50%)	-	-	5	1	6
신혼부부 특별공급		27	-	-	-	2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	-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4	6	4	-	14
합계		39	12	18	2	7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59.6202	074.0328	077.3304	084.9702
약식표기	59	74	77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식표기	공급호실	층별	분양대금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74	101동	5층	501	239,649,175	595,350,825	835,000,000	83,500,000	751,500,000
			502	239,649,175	595,350,825	835,000,000	83,500,000	751,500,000
		6층	601	239,649,175	595,350,825	835,000,000	83,500,000	751,500,000
			602	239,649,175	595,350,825	835,000,000	83,500,000	751,500,000
		7층	701	241,371,205	599,628,795	841,000,000	84,100,000	756,900,000
			702	241,371,205	599,628,795	841,000,000	84,100,000	756,900,000
		8층	801	241,371,205	599,628,795	841,000,000	84,100,000	756,900,000
			802	241,371,205	599,628,795	841,000,000	84,100,000	756,900,000
		9층	901	243,093,235	603,906,765	847,000,000	84,700,000	762,300,000
			902	243,093,235	603,906,765	847,000,000	84,700,000	762,300,000
		10층	1001	243,093,235	603,906,765	847,000,000	84,700,000	762,300,000
			1002	243,093,235	603,906,765	847,000,000	84,700,000	762,300,000
		11층	1101	244,815,265	608,184,735	853,000,000	85,300,000	767,700,000
			1102	244,815,265	608,184,735	853,000,000	85,300,000	767,700,000
	12층	1201	244,815,265	608,184,735	853,000,000	85,300,000	767,700,000	
		1202	244,815,265	608,184,735	853,000,000	85,300,000	767,700,000	
	13층	1301	246,537,295	612,462,705	859,000,000	85,900,000	773,100,000	
		1302	246,537,295	612,462,705	859,000,000	85,900,000	773,100,000	
	14층	1401	246,537,295	612,462,705	859,000,000	85,900,000	773,100,000	
		1402	246,537,295	612,462,705	859,000,000	85,900,000	773,100,000	
	102동	5층	501	239,649,175	595,350,825	835,000,000	83,500,000	751,500,000
			502	239,649,175	595,350,825	835,000,000	83,500,000	751,500,000
		6층	601	239,649,175	595,350,825	835,000,000	83,500,000	751,500,000
			602	239,649,175	595,350,825	835,000,000	83,500,000	751,500,000
		7층	701	241,371,205	599,628,795	841,000,000	84,100,000	756,900,000
			702	241,371,205	599,628,795	841,000,000	84,100,000	756,900,000
		8층	801	241,371,205	599,628,795	841,000,000	84,100,000	756,900,000
			802	241,371,205	599,628,795	841,000,000	84,100,000	756,900,000
901		243,093,235	603,906,765	847,000,000	84,700,000	762,300,000		

		902		243,093,235	603,906,765	847,000,000	84,700,000	762,300,000	
		1001	10층	243,093,235	603,906,765	847,000,000	84,700,000	762,300,000	
		1002		243,093,235	603,906,765	847,000,000	84,700,000	762,300,000	
		1101	11층	244,815,265	608,184,735	853,000,000	85,300,000	767,700,000	
		1102		244,815,265	608,184,735	853,000,000	85,300,000	767,700,000	
		1201	12층	244,815,265	608,184,735	853,000,000	85,300,000	767,700,000	
		1202		244,815,265	608,184,735	853,000,000	85,300,000	767,700,000	
		1301	13층	246,537,295	612,462,705	859,000,000	85,900,000	773,100,000	
		1302		246,537,295	612,462,705	859,000,000	85,900,000	773,100,000	
		1401	14층	246,537,295	612,462,705	859,000,000	85,900,000	773,100,000	
		1402		246,537,295	612,462,705	859,000,000	85,900,000	773,100,000	
		1501	15층	248,259,325	616,740,675	865,000,000	86,500,000	778,500,000	
		1502		248,259,325	616,740,675	865,000,000	86,500,000	778,500,000	
		1601	16층	248,259,325	616,740,675	865,000,000	86,500,000	778,500,000	
		1602		248,259,325	616,740,675	865,000,000	86,500,000	778,500,000	
		77	101동	503	5층	260,216,852	607,783,148	868,000,000	86,800,000
603	6층			260,216,852	607,783,148	868,000,000	86,800,000	781,200,000	
703	7층			262,015,586	611,984,414	874,000,000	87,400,000	786,600,000	
803	8층			262,015,586	611,984,414	874,000,000	87,400,000	786,600,000	
903	9층			263,814,320	616,185,680	880,000,000	88,000,000	792,000,000	
1003	10층			263,814,320	616,185,680	880,000,000	88,000,000	792,000,000	
1103	11층			265,613,054	620,386,946	886,000,000	88,600,000	797,400,000	
1203	12층			265,613,054	620,386,946	886,000,000	88,600,000	797,400,000	
1303	13층			267,411,788	624,588,212	892,000,000	89,200,000	802,800,000	
	102동		1403	14층	267,411,788	624,588,212	892,000,000	89,200,000	802,800,000
			503	5층	260,216,852	607,783,148	868,000,000	86,800,000	781,200,000
			603	6층	260,216,852	607,783,148	868,000,000	86,800,000	781,200,000
			703	7층	262,015,586	611,984,414	874,000,000	87,400,000	786,600,000
			803	8층	262,015,586	611,984,414	874,000,000	87,400,000	786,600,000
			903	9층	263,814,320	616,185,680	880,000,000	88,000,000	792,000,000
			1003	10층	263,814,320	616,185,680	880,000,000	88,000,000	792,000,000
		1103	11층	265,613,054	620,386,946	886,000,000	88,600,000	797,400,000	
		1203	12층	265,613,054	620,386,946	886,000,000	88,600,000	797,400,000	
		1303	13층	267,411,788	624,588,212	892,000,000	89,200,000	802,800,000	

		1403	14층	267,411,788	624,588,212	892,000,000	89,200,000	802,800,000
		1503	15층	269,210,522	628,789,478	898,000,000	89,800,000	808,200,000
		1603	16층	269,210,522	628,789,478	898,000,000	89,800,000	808,200,000
59	103동	301	3층	168,124,689	559,275,311	727,400,000	72,740,000	654,660,000
		302		168,124,689	559,275,311	727,400,000	72,740,000	654,660,000
		401	4층	168,124,689	559,275,311	727,400,000	72,740,000	654,660,000
		402		168,124,689	559,275,311	727,400,000	72,740,000	654,660,000
		501	5층	169,511,475	563,888,525	733,400,000	73,340,000	660,060,000
		502		169,511,475	563,888,525	733,400,000	73,340,000	660,060,000
		601	6층	169,511,475	563,888,525	733,400,000	73,340,000	660,060,000
		602		169,511,475	563,888,525	733,400,000	73,340,000	660,060,000
		701	7층	170,898,261	568,501,739	739,400,000	73,940,000	665,460,000
		702		170,898,261	568,501,739	739,400,000	73,940,000	665,460,000
		801	8층	170,898,261	568,501,739	739,400,000	73,940,000	665,460,000
		802		170,898,261	568,501,739	739,400,000	73,940,000	665,460,000
		901	9층	172,285,047	573,114,953	745,400,000	74,540,000	670,860,000
		902		172,285,047	573,114,953	745,400,000	74,540,000	670,860,000
		1001	10층	172,285,047	573,114,953	745,400,000	74,540,000	670,860,000
		1002		172,285,047	573,114,953	745,400,000	74,540,000	670,860,000
		1101	11층	173,671,833	577,728,167	751,400,000	75,140,000	676,260,000
		1102		173,671,833	577,728,167	751,400,000	75,140,000	676,260,000
		1201	12층	173,671,833	577,728,167	751,400,000	75,140,000	676,260,000
		1202		173,671,833	577,728,167	751,400,000	75,140,000	676,260,000
		1301	13층	175,058,619	582,341,381	757,400,000	75,740,000	681,660,000
1302	175,058,619	582,341,381		757,400,000	75,740,000	681,660,000		
1401	14층	175,058,619	582,341,381	757,400,000	75,740,000	681,660,000		
1402		175,058,619	582,341,381	757,400,000	75,740,000	681,660,000		
1501	15층	176,445,405	586,954,595	763,400,000	76,340,000	687,060,000		
1502		176,445,405	586,954,595	763,400,000	76,340,000	687,060,000		
1601	16층	176,445,405	586,954,595	763,400,000	76,340,000	687,060,000		
1602		176,445,405	586,954,595	763,400,000	76,340,000	687,060,000		
1701	17층	177,832,191	591,567,809	769,400,000	76,940,000	692,460,000		
1702		177,832,191	591,567,809	769,400,000	76,940,000	692,460,000		
1801	18층	177,832,191	591,567,809	769,400,000	76,940,000	692,460,000		

		1802		177,832,191	591,567,809	769,400,000	76,940,000	692,460,000
104동	3층	301		168,124,689	559,275,311	727,400,000	72,740,000	654,660,000
		302		168,124,689	559,275,311	727,400,000	72,740,000	654,660,000
	4층	401		168,124,689	559,275,311	727,400,000	72,740,000	654,660,000
		402		168,124,689	559,275,311	727,400,000	72,740,000	654,660,000
	5층	501		169,511,475	563,888,525	733,400,000	73,340,000	660,060,000
		502		169,511,475	563,888,525	733,400,000	73,340,000	660,060,000
	6층	601		169,511,475	563,888,525	733,400,000	73,340,000	660,060,000
		602		169,511,475	563,888,525	733,400,000	73,340,000	660,060,000
	7층	701		170,898,261	568,501,739	739,400,000	73,940,000	665,460,000
		702		170,898,261	568,501,739	739,400,000	73,940,000	665,460,000
	8층	801		170,898,261	568,501,739	739,400,000	73,940,000	665,460,000
		802		170,898,261	568,501,739	739,400,000	73,940,000	665,460,000
	9층	901		172,285,047	573,114,953	745,400,000	74,540,000	670,860,000
		902		172,285,047	573,114,953	745,400,000	74,540,000	670,860,000
	10층	1001		172,285,047	573,114,953	745,400,000	74,540,000	670,860,000
		1002		172,285,047	573,114,953	745,400,000	74,540,000	670,860,000
	11층	1101		173,671,833	577,728,167	751,400,000	75,140,000	676,260,000
		1102		173,671,833	577,728,167	751,400,000	75,140,000	676,260,000
	12층	1201		173,671,833	577,728,167	751,400,000	75,140,000	676,260,000
		1202		173,671,833	577,728,167	751,400,000	75,140,000	676,260,000
13층	1301		175,058,619	582,341,381	757,400,000	75,740,000	681,660,000	
	1302		175,058,619	582,341,381	757,400,000	75,740,000	681,660,000	
14층	1401		175,058,619	582,341,381	757,400,000	75,740,000	681,660,000	
	1402		175,058,619	582,341,381	757,400,000	75,740,000	681,660,000	
15층	1501		176,445,405	586,954,595	763,400,000	76,340,000	687,060,000	
	1502		176,445,405	586,954,595	763,400,000	76,340,000	687,060,000	
16층	1601		176,445,405	586,954,595	763,400,000	76,340,000	687,060,000	
	1602		176,445,405	586,954,595	763,400,000	76,340,000	687,060,000	
17층	1701		177,832,191	591,567,809	769,400,000	76,940,000	692,460,000	
	1702		177,832,191	591,567,809	769,400,000	76,940,000	692,460,000	
18층	1801		177,832,191	591,567,809	769,400,000	76,940,000	692,460,000	
	1802		177,832,191	591,567,809	769,400,000	76,940,000	692,460,000	
	19층	1901		178,710,489	594,489,511	773,200,000	77,320,000	695,880,000

		1902		178,710,489	594,489,511	773,200,000	77,320,000	695,880,000
84	103동	1901	19층	391,990,760	798,009,240	1,190,000,000	119,000,000	1,071,000,000
		1902		391,990,760	798,009,240	1,190,000,000	119,000,000	1,071,000,000
	104동	2001	20층	391,990,760	798,009,240	1,190,000,000	119,000,000	1,071,000,000
		2002		391,990,760	798,009,240	1,190,000,000	119,000,000	1,071,000,000

※ 동 구분은 추후에 등기신청 시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잔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지하피트,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 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잔금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계약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정부정책 및 대출은행의 사정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어떠한 경우이든 중도금은 직접 납부 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자는 사업 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합니다.)

※ 분양대금의 계약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년 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만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에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와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 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현장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 서울북부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1년 2월 2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 수도권 배정 물량에서 경쟁 시 해당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미성년 자녀 4명 35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7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3.02.22	전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1년 02월 2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1년 2월 2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청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년 2월 2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3.02.22	전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년 02월 2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지속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IV

청약 신청일정,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3.06.(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접수(서울 강서구 등촌동 633-10)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서울시 2년이상 계속거주)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 및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	2023.03.07.(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03.08.(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받

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방문접수'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사업주체 지정 장소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임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우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우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우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우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우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우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우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④주택소유여부 및 우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우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우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우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점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당첨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신청자가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지정 장소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지정 장소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사업주체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등)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공급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공급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청약주택 등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절차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공급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3.03.14(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03.27(월)~03.29(수)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사무소 (장소 : 서울특별시 등촌동 633-1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www.ziwainapt.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3.14.(화)~2023.03.23.(목) 당첨자 발표일부터 10일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23.03.1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지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기관추천	○		해당기관의 추천서(인정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인정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함
특별공급		○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별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우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를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노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년이상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가족대조일: 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존속은 3년, 비속은 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상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별표1 참조)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별표2 참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리인 제출시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장(접수 장소에 비치),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주민등록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증빙서류 <별표 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날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 해당직장 - 해당직장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로계약서(직인날인) 제출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소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날인)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사업자 확인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견본주택 비치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별표2>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납세사실증명(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검증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지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

가점제 추가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 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및 합산 183일을 초과하는)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이 분리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에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이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증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 증명서류	해당주택	
	○	사업주체 요구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대리인 제출시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장(접수 장소에 비치),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주민등록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VI

계약일정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3.03.27.(월)~2023.03.29.(수)(10:00~16:00)	현장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0(1644-5513)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잔금)	하나은행	210-910049-851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A(101)동 1203호 홍길동이 계약자인 경우 ⇨ 1011203 홍길동, B(102)동 603호 김영수가 계약자인 경우 ⇨ 1020603 김영수, C(103)동 1003호 박영호가 계약자인 경우 ⇨ 1031003 박영호, 302호 김영희가 계약자인 경우 ⇨ 1000302 김영희]
- 분양계약 체결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본인 계약서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단, 본인 계약시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감증명서	본인	•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등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다만, 우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은 무효처리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으로 등기원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

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계약자별로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주택담보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본 입주자 모집공고 대상 공동주택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된 주택으로,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적용 대상이나, 서울시 주택조례 제14조에 의하여 15세대 미만이므로 품질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매수인”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이고,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주체가 최종 통지한 실입주일로부터 45일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2021.05.2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공급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VII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옵션계약은 「주택법」 제 54조 제1항 제 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벽지,조명,위생기기,타일,창호,가구,주방 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 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기 시공된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9	19,800,000	1,980,000	17,820,000	전세대 발코니 확장
74	20,350,000	2,035,000	18,315,000	
77	20,900,000	2,090,000	18,810,000	
84	22,000,000	2,200,000	19,80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계약시, 기시공된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전 세대 확장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 세대 확장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 세대 확장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드레인,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전 세대 확장함)
- 발코니 확장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전 세대 확장함)

■ [유상옵션 I]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별 공급금액												
		59			74			77			84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마감 특화	주방벽 (2면)	인조대리석	660,000	66,000	594,000	760,000	76,000	684,000	690,000	69,000	621,000	660,000	66,000	594,000
	거실/아트월(1면)	타일	280,000	28,000	252,000	310,000	31,000	279,000	330,000	33,000	297,000	360,000	36,000	324,000
침실 특화	침실1	화장대, 드레스룸	1,100,000	110,000	990,000	1,200,000	120,000	1,080,000	1,250,000	125,000	1,125,000	2,500,000	250,000	2,250,000
주방 특화	렌지 후드	전동템퍼식	330,000	33,000	297,000	330,000	33,000	297,000	330,000	33,000	297,000	330,000	33,000	297,000
욕실 특화	욕실	비대	150,000	15,000	135,000	150,000	15,000	135,000	150,000	15,000	135,000	150,000	15,000	135,000
합 계			2,520,000	252,000	2,268,000	2,750,000	275,000	2,475,000	2,750,000	275,000	2,475,000	4,000,000	400,000	3,600,000

※ 유상옵션 I 유의사항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II [빌트인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전 주택형	3구 가스쿡탑	GRA-BH302H	500,000	50,000	450,000	
	주방액정TV	STV-1050	300,000	30,000	270,000	
	홈IOT월패드	SHN-8820	320,000	32,000	288,000	
합계			1,120,000	112,000	1,008,000	

※ 유상옵션 II 유의사항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III [천장형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타입	실내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전 주택형	59	4(1)	4,500,000	450,000	4,050,000	삼성전자
	74	4(1)	5,000,000	500,000	4,500,000	
	77	4(1)	5,500,000	550,000	4,950,000	
	84	4(1)	6,000,000	600,000	5,400,000	

※ 유상옵션 III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계약시기 시공된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 시공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게 제품이 설치됩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델과 브랜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유상옵션 I, 유상옵션 II, 유상옵션III]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품 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설계특화, 빌트인가전, 천장형에어컨,	하나은행	591-910062-168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총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발코니확장, 설계특화, 빌트인가전, 천장형에어컨	59	27,940,000	2,794,000	25,146,000
	74	29,220,000	2,922,000	26,298,000
	77	30,270,000	3,027,000	27,243,000
	84	33,120,000	3,312,000	29,808,000

※ 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상기 표의 동·호수에 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포함 별도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추가 품목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현장공정상 위 표의 추가 품목(유상옵션)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품목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패키지는 개별품목이 불가하며, 해당 패키지는 모집공고 내용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 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 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거실, 주방) 및 유상흡선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악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가구의 길이,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수분양자)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흡선 선택 시 설치되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해당사항 없음)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유상흡선 선택 시 제공되는 가전은 타입에 따라 사양, 색상, 도어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Ⅷ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예정일: 2023년 06월 예정 (항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편의시설, 판매시설 등

■ 공용공간

- 주상복합 건축물의 특성상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등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공용공간)의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개별 입주자가 임의로 전실 등을 구성하거나 공동 구성원(수분양자)에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권리침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전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용공간(공용공간)에 대하여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안내

- 단지 관리업무를 위해 건물관리를 위한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
- 건물관리용역업체는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월 용역비 한도 내에서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할 예정
- 건물관리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는 월 용역비에 포함될 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92023-101-0000400	₩11,094,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 ③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⑤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⑨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 ⑩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 ①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지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개정 2019. 7.25.>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 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주)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128,987,900	543,75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관계자 현황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사	㈜하나자산신탁	110111-1714818
시행위탁사	김영인	
시공회사	한동건설(주)	130111-0001212
분양대행사	㈜지와인산업개발	110111-7369279

■ 관리형 토지신탁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사인 김영인,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한동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사 겸 수익자인 김영인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영인과 수탁자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영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영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③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겸 수익자인 김영인과 시공사인 한동건설(주)에게 있습니다.
- ④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⑥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주)하나자산신탁
-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5층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007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규모
 - ①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3-10 일원
 - ② 지목 : 대지
 - ③ 용도 : 공동주택
 - ④ 규모 : 지하 2층 ~ 지상 14층~ 20층(5층 ~ 지상 20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시 개별등기

구 분	내 용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항공기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음방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조치(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 본 주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는 건본주택내 건립타입(59,74,77타입)이 있으며 미건립타입(84타입)으로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건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리스트는 분양계약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공장자재(타일 등), 천연자재(석재 등), 마감자재(슈트, 엔지니어드 스톤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안내된 기계환기장치,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화재대피함 등의 제품 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공사시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바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확인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 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의 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건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감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광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건축허가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 합니다.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단지는 견본주택을 통하여 안내해드린 단위세대 평면구조 등의 설계도서 반영, 1층 바닥레벨의 조정(건축물 부위별층고 조정 포함)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경미한 설계변경 포함)이 예정 되어 있음.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건축허가(변경), 교통용량성검토,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해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의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와 단지계획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동 옥상/옥탑,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동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은 지상1층 우측면에 설치 될 예정이며, 102동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은 지상1층 좌측 DA구간 상부공간에 위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음 및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최종 건축허가(변경)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고,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102동 후면 지상1층 1개소 설치 예정이나, 사업주체 디자인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및 지상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급배기용)과 제연웬룸의 급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101동과 102동 사이에 차량 진출입구 1개소(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19년 3월 1일 이전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으로 일반주차구획 폭이 2,300mm로 구획되었음을 인지하여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통신 안테나는 101동 옥상,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설비는 101동 옥상 및 지하2층 창고에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에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지상주차장(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민휴게공간, 주민편의시설, 등 시설 인근 세대는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의 소음 등의 간섭, 실외기 및 배기구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세대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 또는 이삿짐 사다리차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지역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단지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대상건물이며, 이에 따라 각 동 옥상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주차장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에 비상시 대피가 가능한 대피공간이 계획됩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실외기 그릴창은 외관 디자인 및 사용성을 감안하여 색상, 사이즈 및 개폐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과 대피공간은 화재안전을 고려하여 별도 구획이 되어 있으며, 입주후 구조변경은 불가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를 위해 각 세대 내 창호에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법적 소방관진입창의 기준에 맞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로 채광방향이 상이함에 따라 일조, 채광, 조망, 사생활 간섭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각 세대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내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과정중 사용성능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시 발코니 등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침실,욕실,PD 등)는 실 시공시 경량벽체 및 ALC블럭, 조적벽체,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침실,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신발장, 싱크대, 화장실 도기, 샤워부스, 욕조 등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제외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실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 및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디딤판/걸레받이, 욕실바누덕, 주방상판 및 벽체, 화장대에 사용되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경량 벽체시공에 의하여 일부면적이 가구 또는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을 위한 급수, 배수, 환기, 전력공급 등을 위한 각종 설비가 세대 내부 배관으로 지나감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 됩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을 위한 부속이 노출됩니다.
- 보일러 상부에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CO감지기가 설치되며 교체 주기마다 교체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세대내 문 및 창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시 확장시의 무상옵션 항목들을 제공 및 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천정고는 최대 2.3M로 우물천정 등의 설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합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E)	내진설계범주	내진등급	반응수정계수(R)
0.176	S2	1.2	C	I	4.0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등급 VII 이며, 유효지반가속도는 0.180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거)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능등급을 표시합니다. - 성능등급 : 일반등급(그린4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
단지외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예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외부의 공원, 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사항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자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의 계획이 변경되어, 입주 시기에는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사업부지 주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약취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건축 허가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건축허가(변경),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행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기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와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및 지상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단지 동측에 차량 진출입구 1개소(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선통신 안테나는 101동 옥상,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설비는 101동 옥상 및 지하2층 창고에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에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지상주차장(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민휴게공간, 주민편의시설, 등 시설 인근 세대는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의 소음 등의 간섭, 실외기 및 배기구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세대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 또는 이삿짐 사다리차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지역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주차장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의해 지상10층 이하의 각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을 위한 부속이 노출됩니다.
 - 보일러 상부에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CO감지기가 설치되며 교체 주기마다 교체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세대내 문 및 창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정고는 최대 2.3M로 우물천정 등의 설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 합니다.

■ 설계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인허가 및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2018년 12월 14일 교통영향평가심의완료(2018년 12월 심의), 2019년 1월 25일 지구단위계획수립·건축·경관심의완료(2018년 12월 접수), 2019년 4월 19일 최초 사업계획 승인완료(2019년 2월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 또는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준공 전 또는 후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의 변경으로 건물용 및 용적률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들의 요청,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동·호수별 등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적	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공동주택과 업무·근린생활시설로 각 용도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각 용도별 대지지분은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별도 경계구획 및 구분 등이 불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타입 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유무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 등으로 본 공사 시 발코니 실사용 면적 등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시 인허가 협의 결과 또는 현장 공사 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전용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사항은 수분양자의 동의 또는 고지를 진행 후 평면 및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의 실제 공급면적(주거공용 면적, 계단실면적 등), 계약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대지지분 및 전용률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공용부 면적(계단실,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설비공간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도로 및 조경선,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평가(소규모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한 내용 중 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 단지의 사업시행 인가의 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 등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여부 또는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콘센트, 조명스위치 등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분양가에 포함되는 항목(가구, 각종 등기구, 전자제품 등)은 개인적인 요구 및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 공사 시 창호 및 유리의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브랜드, 하드웨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벽체에는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재 두께 및 현장여건에 따라 주동 저층부 외부 마감재(석재뿔칠 등)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세대의 창호사이즈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도시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 및 전기변압시설 등의 시설물이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며, 설치 계획에 따라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부대 복리 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의 구성 및 평면, 입면, 구조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기용 D/A, 제연휨룸 D/A, 재활용품보관소 등의 지상 돌출물 및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변환경	기부 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부지의 일부는 기부채납(예정)되며, 해당 기부채납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단지 외 등촌동 633-15, 16 지번에는 대지지분면적 580.71㎡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942㎡가 설치되며, 이 시설은 준공 후 대지와 시설이 기부채납 됩니다.
	단지 주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의 주변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북측에는 폭 약 29.5m 양천로(6차로)가 설치됩니다. 단지 동측에는 폭 약 9.5m 2차로 도로가 설치됩니다. 단지 남측 도로는 현재 일방통행구역이며, 그로 인하여 주차장 진출입에 불가하거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접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북측에는 테슬라 강서서비스센터, 삼일자동차,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여 소음, 냄새, 빛공해, 불법주차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남측에는 연우빌라, 단지 서측에는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이 위치하여 소음, 냄새, 빛공해, 불법주차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지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서측과 남측은 단지레벨보다 낮으며, 단지와 도로 간 레벨차이로 인한 계단, 화단이 설치됩니다. 단지 북측 인접지 레벨은 단지레벨보다 높거나 낮은 경사지이며, 동측 도로레벨은 단지레벨과 비슷하며 단지 주진입로가 설치된다.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본 단지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간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계단, 옹벽, 화단 등의 구간 및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대지와의 레벨 관계에 의하여 일부 출입구 부분에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설치되는 공개공지, 어린이놀이터, 옥상조경 단지 내 조경 등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조경 식재 부분과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해충침입, 악취발생, 환기, 채광 및 조망 불량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과 제연을 위한 시설물(DRY AREA, 배기구 등)과 재활용품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및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악취, 조명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지상 1~18층에는 오피스·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하여 소음 및 냄새, 조명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옥탑층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구조물,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및 시행자 또는 시공사 BI 사인물 등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p>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또는 최상층 세대는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동 및 공용부 입면 일부 구간에 재료(유리 포함)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설계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색상, 옥상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디자인,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DA, 옹벽 등),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 바닥 디자인 등), 단지 사인 및 조명(단지 B사인물 포함),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등) 등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공법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일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외부 벽면, DA 등 외부시설물,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부위는 별도 지정도장 마감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어린이놀이터와 옥외주차장-1 차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비상시 소방차 정차 공간이 설치되며, 위치 이동 및 제거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출입구(필로티 포함)(추가)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폭, 높이)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동 출입구의 입접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입주자의 통행, 현관 조명, 단지 내 조명 등으로 인하여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101동, 102동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오피스와 인접 설치되고, 지상 2~4층 피난계단은 근린생활시설·오피스 일부 복도와 연결되어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 침해, 보안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자전거보관소는 102동 관리사무소측면, 101동 122호 근린생활시설 후면, 103동 좌, 우측면 설치되며 위치는 배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인 택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상 1층 관리사무소 내부 또는 지하1층 업무동 출입구, 지하2층 공동주택 공동시설에 설치하며 택배함 수량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설치됩니다.
재활용품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분리수거장은 102동 후면 지상1층에 1개소 설치예정입니다. • 재활용품보관소는 101동 지하 1층에 설치됩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이용에 관련하여 필요시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계단실의 형태는 전용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 형태에 따라 설비PD,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형태 및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해당 동에 따라 각각 다르고,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지하 2층에 공동주택 주차장이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구역은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복합(오피스·근린생활시설)시설주차장은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 계획의 특성상 지상1층의 경우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의 주차구역은 비상 및 응급용으로 공동 사용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개별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153대로 계획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 중 조례 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구획을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평면 계획에 따라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은 기동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 또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 입주인 공동시설은 입주인을 위한 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동,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높이 2.7m 차량은 지상1층에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진입램프 및 지하주차장에는 높이 2.3m 미만의 차량은 전 층 출입이 가능 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차공간은 높이 2.1m 미만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일부구간은 건축물의 구조 및 기계,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유효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옥탑, 측벽에 태양광 구조물, 위성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는 전문 업체의 검토를 통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소음발생,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제연실 포함) 및 정화조, 제연 및 환기용 DA탑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1층 복합시설 주차장에 1대, 지하2층 공동주택 주차장에 1대 설치되며,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 입주자대표단 및 관리주체 간 협의를 통하여 사용가능여부 및 사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전기차 충전설비는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지하층의 경우 공기 미순환 등으로 인해, E/V홀 내부 및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지하주차장 외벽 및 구조물 등에 결로 및 습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북측 복합 상가 측면과 남측 공개공지 인근에 복합시설 및 공동주택의 기계/전기실 등의 환기 및 제연을 위한 DA(환기탑)이 설치되며, 인접한 시설물 또는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풍압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홈네트워킹 등 단지 내 공용설비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이사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시 단지 내 보차도 바닥 마감, 조명, 세대의 층수, 창호형태 및 크기, 평면 형태, 입면 장식, 돌출발코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의 제원에 따라 운반 가능한 이삿짐의 크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 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이며, 용도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 보관대 등이 계획되었으며, 복리시설은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일체의 운영 및 보안, 유지 관리는 입주인 자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위한 입주인공동시설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이용에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로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눈부심,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실외기, 환기시설 등은 해당시설 외부 또는 외기를 향하여 설치되며,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102동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등의 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며,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단지의 지상1층 어린이놀이터 내에 설치될 예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대체되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 또는 미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3층에 설치되며, 시설 이용자 및 입점업종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오피스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오피스 각실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원격검침설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위세대	마감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경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장의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정고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화장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 및 타일 줄눈의 모양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내부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시트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수량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흰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가구 및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약세서리, 힌지 등의 가구철물은 제품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의 벽체의 마감 두께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길이는 다소 줄어 들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돌출 되거나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반드시 실제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주방의 기본사양 가전류 외 고품량 가전제품(전기인덕션 등)의 추가 설치에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발코니 내 세탁기 설치 등으로 인한 단차 발생구간은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2 ~20층 중 3~10층세대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공간의 사용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완강기가 설치되는 부분의 하부에는 피난을 위한 발판(벽부 고정형 접이식 발판 또는 발판 겸용 완강기함)이 설치 또는 비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외부에 별도 설치가 불가하오니 구매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방충망을 닫고 사용 하는 경우에는, 냉방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그릴창의 그릴을 개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쇄한 상태로 작동 시 냉방성능 저하, 고장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 또는 그릴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창호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설치되는 창호,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 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본 공사 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 프레임 및 날개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옥외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및 외부공간에는 동파발생 등에 따라 별도 수전을 설치하지 않으며, 입주 후 임의로 수전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옥외 일부구간 조정수전 설치) • 옥상 및 외부공간은 본 공사 시 건축평면 및 입면형태에 따라 해당 외부공간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바닥의 단차, 난간, 배수처리 방법은 본 공사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및 외부공간은 외측에 직접 노출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철재 난간이 설치되며,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비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입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보일러, 전열교환기,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설치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설치되는 냉방전용 에어컨은 거실, 침실1,2,3(주방제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스탠드형 및 벽걸이용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의 실외기는 해당실 인근 주차장 내에 설치되며, 지상 2층, 3층 주민공동시설 등 실외기는 해당시설 발코니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인접한 세대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열기에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전열교환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상부에 발코니 및 테라스 등이 설치되는 경우 상부층 발코니의 배수 및 우수 배관이 천장 또는 천장속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배수용 선풍통은 발코니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 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욕상층 및 PD 또는 AD 등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용 정화조 배기덕트가 통합하여 설치됩니다. 배기관의 설치위치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주방 및 욕실 내 배기는 직접배기방식으로 설치되며, 그로인해 일부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기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전기기구(홈네트워크,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등)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기분전반 / 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방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및 선택제에 따라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div style="text-align: center;"> <h3>녹색건축 예비인증서</h3>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 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반송동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 건축공사 건축주 : (사)한글빌딩협회 준공일 : 2022.03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20 제 8빌딩 층수 :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 40,864.1388㎡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설계자 : (사)한글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 G-SEED-P-2021-0912-8 인증기관 : (사)한글빌딩협회 유효기간 : 2021.09.03. ~ 사용승인일(사용권사실)까지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동안 유효함 인증등급 : 우등(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8-6) 특별건축물 : [별표1]건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별표3]건축비주거용건축물(업무용건축물) 국토교통부시책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호 </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촉진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등, 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09월 03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한글빌딩협회 회장</p> <p style="font-size: small;">*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결과에 따라 인증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반송동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 건축공사 건축주 : (사)한글빌딩협회 준공일 : 2022.03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20 제 8빌딩 층수 :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 40,864.1388㎡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설계자 : (사)한글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P-2021-0912-8 인증기관 : (사)한글빌딩협회 유효기간 : 2021.09.03. ~ 사용승인일(사용권사실)까지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동안 유효함 인증등급 : 우등(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8-6) 특별건축물 : [별표1]건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별표3]건축비주거용건축물(업무용건축물) 국토교통부시책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호	<div style="text-align: center;"> <h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div>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6차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6.)</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 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반송동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 건축공사(사무주거) 인증번호 : 20220201 주소 :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0-1101 제8빌딩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면적 : 33109.8320㎡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업무 시설 설계자 : (사)한글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 21-11-02-114-0201 평가자 : 산주영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인증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권사실 종료일 인증등급 : 1++등급 </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h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h4>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단열기준</th> <th>단열등급</th> <th>단열등급</th> <th>단열등급</th> <th>단열등급</th> </tr> <tr> <th></th> <th>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1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2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3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4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r> </thead> <tbody> <tr> <td>에너지소비량</td> <td>48.8</td> <td>15.4</td> <td>42.3</td> <td>7.2</td> <td>4.5</td> </tr> <tr> <td>난방</td> <td>13.3</td> <td>10.2</td> <td>26.2</td> <td>4.5</td> <td>3.1</td> </tr> <tr> <td>냉방</td> <td>7.5</td> <td>7.0</td> <td>16.1</td> <td>4.1</td> <td>3.1</td> </tr> <tr> <td>총합</td> <td>16.6</td> <td>13.1</td> <td>32.2</td> <td>6.1</td> <td>3.5</td> </tr> <tr> <td>평가</td> <td>86.2</td> <td>51.0</td> <td>134.3</td> <td>23.4</td> <td></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h4>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h4>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단열기준</th> <th>단열등급</th> <th>단열등급</th> <th>단열등급</th> <th>단열등급</th> </tr> <tr> <th></th> <th>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1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2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3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4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r> </thead> <tbody> <tr> <td>난방</td> <td>13.3</td> <td>10.2</td> <td>26.2</td> <td>4.5</td> <td>3.1</td> </tr> <tr> <td>냉방</td> <td>7.5</td> <td>7.0</td> <td>16.1</td> <td>4.1</td> <td>3.1</td> </tr> <tr> <td>총합</td> <td>16.6</td> <td>13.1</td> <td>32.2</td> <td>6.1</td> <td>3.5</td> </tr> <tr> <td>평가</td> <td>86.2</td> <td>51.0</td> <td>134.3</td> <td>23.4</td> <td></td> </tr> </tbody> </table> <p>■ 단열기준을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난방, 냉방,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에너지량 ■ 단열기준을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난방, 냉방,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또는 단열기준을 에너지량 ■ 단열기준을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난방, 냉방, 조명, 환기, 냉수, 난방, 조명, 환기 부문에서 또는 단열기준을 에너지량 ■ 단열기준을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난방, 냉방, 조명, 환기 부문에서 또는 단열기준을 에너지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단 V) 설치된 [] 설치된 건물입니다. * 단열기준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결과에 따라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열기준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결과에 따라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열기준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결과에 따라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열기준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결과에 따라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06월 22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반송동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 건축공사(사무주거) 인증번호 : 20220201 주소 :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0-1101 제8빌딩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면적 : 33109.8320㎡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업무 시설 설계자 : (사)한글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1-11-02-114-0201 평가자 : 산주영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인증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권사실 종료일 인증등급 : 1++등급	구분	단열기준	단열등급	단열등급	단열등급	단열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1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2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3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4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에너지소비량	48.8	15.4	42.3	7.2	4.5	난방	13.3	10.2	26.2	4.5	3.1	냉방	7.5	7.0	16.1	4.1	3.1	총합	16.6	13.1	32.2	6.1	3.5	평가	86.2	51.0	134.3	23.4		구분	단열기준	단열등급	단열등급	단열등급	단열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1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2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3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4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난방	13.3	10.2	26.2	4.5	3.1	냉방	7.5	7.0	16.1	4.1	3.1	총합	16.6	13.1	32.2	6.1	3.5	평가	86.2	51.0	134.3	23.4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반송동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 건축공사 건축주 : (사)한글빌딩협회 준공일 : 2022.03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20 제 8빌딩 층수 :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 40,864.1388㎡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설계자 : (사)한글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P-2021-0912-8 인증기관 : (사)한글빌딩협회 유효기간 : 2021.09.03. ~ 사용승인일(사용권사실)까지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동안 유효함 인증등급 : 우등(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8-6) 특별건축물 : [별표1]건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별표3]건축비주거용건축물(업무용건축물) 국토교통부시책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호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반송동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 건축공사(사무주거) 인증번호 : 20220201 주소 :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0-1101 제8빌딩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면적 : 33109.8320㎡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업무 시설 설계자 : (사)한글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1-11-02-114-0201 평가자 : 산주영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인증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권사실 종료일 인증등급 : 1++등급																																																																																						
구분	단열기준	단열등급	단열등급	단열등급	단열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1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2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3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4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에너지소비량	48.8	15.4	42.3	7.2	4.5																																																																																		
난방	13.3	10.2	26.2	4.5	3.1																																																																																		
냉방	7.5	7.0	16.1	4.1	3.1																																																																																		
총합	16.6	13.1	32.2	6.1	3.5																																																																																		
평가	86.2	51.0	134.3	23.4																																																																																			
구분	단열기준	단열등급	단열등급	단열등급	단열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1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2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3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4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난방	13.3	10.2	26.2	4.5	3.1																																																																																		
냉방	7.5	7.0	16.1	4.1	3.1																																																																																		
총합	16.6	13.1	32.2	6.1	3.5																																																																																		
평가	86.2	51.0	134.3	23.4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심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조치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친환경 인증보일러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미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설치

※ 본 사업은 건축허가 건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법적사항이 아니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적용함.

■ 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0 일원

■ 홈페이지 : <http://www.ziwainapt.com/>

■ 견본주택 : 등촌동 633-10 일원

■ 분양문의 : ☎ 1644-5513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